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7.9.22.)에 따라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디자인 우선권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스페인을 추가 지정하고, DAS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을 헤이그 출원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며 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미국 및 일본을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가능 국가 추가 및 제출방식 확대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스페인”을 지정
 - DAS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을 헤이그 출원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미국 및 일본을 지정